

## 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6-05호

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·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'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20일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
###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·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설치(안 제4조)

- 1)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, 사실관계 확인 및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·관리 등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두도록 함.
- 2) 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겸임하고,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업무를 수행하도록 함.

##### 나.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5조)

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를 전자적으로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, 보완 요구 및 처리 등의 업무는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.

##### 다.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

- 1)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직원 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익명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.
- 2)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로 접수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익명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.
- 3)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,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센터장은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후 내사사건으로 수리되도록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함.
- 4)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익명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않는 등 내사 개시의 필요성이

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내사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사건관리담당관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5동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사건관리담당관실)

- 전자우편: spring9@korea.kr

- 팩스: (02)6320-0268

### 4. 그 밖의 사항

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[사건관리담당관실, (02)6320-0375]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(<http://www.cio.go.kr>) <법령정보-입법·행정예고>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